

대전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2298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11. 7.

판결 선고2024. 12. 1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842,743원 및 그 중 26,203,976원에 대하여 2024. 2. 2.부터 2024. 8. 2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2.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 2. 9. 접수 제67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5.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 5. 17. 접수 제27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판사문춘언

별지